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관징계법」이 개정(법률 제15250호, 2017. 12. 19. 공포, 2017. 12. 19.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및 징수 등 그 밖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등(안 제2조의2 신설)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의 제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함
-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위원회가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의결하도록 함

3)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도록 함

4)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앞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 형량, 실형·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하도록 함

나.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및 징수 등(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할 때 피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 또는 감

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함

2) 피청구인이 납부고지 또는 감면 납부고지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하도록 함

3)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 납부 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납부 후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대법원장이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도록 함

4.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제2조제3항 중 “징계청구”를 “징계등 청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청구”를 “징계등 청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징계결정”을 “징계등 결정”으로 하고, “행하며”를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로, “징계의”를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징계결정서”를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의 집행)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 관 징 계 청 구 서

징계대상자	성명	()	소속		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별지와 같음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대상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p>위와 같이 징계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직 위 성 명 </p> <p>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1호의2서식]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청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징계결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 사유						
<p>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직 위 성 명 </p> <p>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징계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결정 주문			
이유			
<p>년 월 일</p> <p>법관징계위원회</p> <p>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계청구등)</p> <p>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 다.</p> <p>② (생략)</p> <p>③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분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2조(징계청구등)</p> <p>① -- 제7조 및 제7조의2-- <u>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징계등 청구</u> ----- ----- ----- -----</p> <p>제2조의2(징계부가금 청구) ① <u>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p><u>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u></p> <p><u>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u></p>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 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청구)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도서관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결정서)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청구)

----- 징계등 청구 -----

제7조(징계결정서)

① -----징계등 결정-----

-----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제8조(징계의 집행)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감면의 -----

② -----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제8조(징계의 집행)

① -----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연락처	(02) 3480 - 1796